

2024년 2월 15일

Preview

물건이나 종이문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압수수색은 전자증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전자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의 내용과 절차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리걸 이슈 Legal Issues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방안

## 민후 소식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AI 전문 로펌으로 SBS BIZ에 소개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 리스크 검토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 리걸이슈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방안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전자증거의 압수는 빈번하고 압수된 전자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에 한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상세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고, 이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즉 '원본'을 반출하거나 또는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복제본' 형태로 반출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돼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통째로 압수를 한 다음 수사기관 내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째로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원본을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원본에 대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고, 수사기관이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복제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이 반출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통째로 압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상세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고, 이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유관정보(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무관정보(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무관정보는 압수 이후 삭제·폐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없는데 실무에는 무결성 검증 등의 목적으로 복제본을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가 입건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영장 발부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했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에, 가사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집행은 불가하다.

이상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피압수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방안](#)

민후 소식

법무법인 민후 AI 전문 로펌으로 SBS BIZ에 소개

법무법인 민후는 2024년 1월 19일 SBS BIZ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AI 전문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AI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TDM 도입 논의 등 현재의 입법동향,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책임, AI의 결과물을 재학습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문제 등 현재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바로보기>

- SBS Biz 채널 -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생성형 AI로 인한 법률적 갈등은?](#)
- YOUTUBE 채널 -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생성형 AI로 인한 법률적 갈등은?](#)

## 민후 소식

#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글로벌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내법·미국법상 법률리스크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크롤링을 활용한 업무 행위의 적법성을 진단함은 물론, 크롤링 예정 웹사이트들의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A사 예정 서비스의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미국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크롤링 활용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위험성을 진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민후 소식

### 회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